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송옥주 · 이병진
문대림 · 임호선 · 강준현
임오경 · 박지혜 · 위성곤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.

그럼에도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

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, 제13조의2 신설).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건강생활지원센터”를 “건강생활지원센터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보건진료소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
1. “지역보건의료기관”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<u>건강생활지원센터</u> 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강생활지원센터</u> <u>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보건진료소</u> ----- -----
2.·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2.·3. (현행과 같음) <u>제13조의2(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 대해</u>

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
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임용
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
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
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